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과 각종 영향평가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전제조건

한상욱 |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장
광운전략환경평가연구소장



정부에서는 해를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전략환경평가 체계로의 개편과 교통, 인구, 해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통합키로 하였다. 한편 세계 100여 개국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의 모임인 국제영향평가학회의 27차년차 총회가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한바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하하여야 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시화ampus호건설사업을 위시한 영월 동감댐건설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 북한산 관통도로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정산구간터널공사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결과에서 목도했듯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에 따른 환경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의 면죄부를 발급하는 통과의례식 제도로 펼쳐, 관련기관, 관련기업, 전문가 등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3p라함), 프로젝트(이를 포함 4p라함)로 구체화되는 의사결정의 계층구조 가운데 대안선택의 폭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하위프로젝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EIA)가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대안이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화된 국가들은 지속성을 지향목표로 상위 의사결정단계의 3P를 대상으로 전략환경평가(SEA)를 하위프

로젝트단계에 환경영향평가(EIA)가 적용되는 구조로 계층을 이루어 환경영향평가(EA)가 실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과제이기도 하다.

국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인구, 재해, 교통 영향평가가 별개제도로 운영되고 전략환경평가의 초보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PERS)라는 명칭 하에 일부행정계획과 환경영향평가대상 보다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이의 전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타당성조사제도등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4p의 기획과정과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지속성의 요체인 사회, 경제영향평가 등의 부실과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정역활의 미흡은 일관된 사업추진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획과정과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과정이 연계, 통합되고 일관성 있게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차적 규정 등 제도의 마련은 필연적인 과제가 되어 왔었다.

통합의 틀은 지속성을 상위목표로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환경적 수용성(Environmental Capacity),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이 전과정의 기저를 이루는 구조(Triple Bottomline)

로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보건영향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적 규정은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4P의 기획과정(Planning Process)과 SEA, EIA 등 영향평가과정이 연계되고 그 후속조치로 EMS가 적용되는 수직적인 통합과 각종 영향평가의 SEA, EIA에로의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기능은 4P의 기획, 인허가, 승인부서 및 개발계획주관자가 되고 협의기능은 전부처가 조정기능은 중립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환경부서 기능의 재편과 전문컨설팅제도 도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컨설팅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SEA, EIA, EMS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회고

본 연합회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본 연합회는 법인세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 공고 제2004-137호(2004. 12. 17)에 의거 공고되었다.

본 연합회는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연합회 회관건립기금이나 기타기금 마련에 활력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기부금은 년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시 손비처리 되므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간 순이익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간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